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수신 김 - 귀하 (우3845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항길

(경유)

제목 거짓구인광고신고에 대한 회신(김)

1. 귀하의 직업안정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신고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03.25. 제출한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하의 신고 내용 만으로는 거짓구인광고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거짓구인광고 범위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거짓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거짓구인광고의 범위(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신고서와 첨부 자료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우편: (11787)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의정부지청 3층 고용관리과
 - 팩스: 0505-130-0055 (팩스 제출 후 031-850-7714로 전화 요망). 끝.

한글서체

전화번호 031-850-7714 팩스번호 0505-130-0055 / violet315@korea.kr / 비공개(5)